



서울회생법원

정본입니다.

제 1 부

2022. 3. 29.
법원사무관 김제석



결 정

사 건 2020회합100189 회생
 채 무 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
 평택시 동삭로 455-12
 법률상관리인 정용원

주 문

1. 2022. 4. 1. 15: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취소한다.
2. 관리인, 채무자,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·회생담보권자 주주·지분권자 및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.

이 유

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주문 기재의 관계인집회기일을 개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, 민사소송법 제222조를 적용하여 위 관계인집회기일을 취소하기로 하고, 공고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
2022. 3. 29.

재판장

판사

서경환



판사

이동식



판사

나상훈

